

칠곡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16.
행정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 5. 26.

나. 제출자: 칠곡군수

다. 회부일자: 2023. 5. 31.

라. 상정일자: 제292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2023. 6. 16. 상정·심사·의결)

2. 제출설명의 요지(제출설명자: 복지정책과장 민영기)

가. 제출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가 변경됨에 따라 지원대상 기준을 조정하여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지원대상 기준 변경(안 제2조)

- 현행: 월 10,000원 미만
- 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2) 지원대상 구체화(안 제2조제3호)

- 현행: 한 부모 가족 세대
- 변경: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3)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을 명시(안 제3조제1항)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병선)

- 「칠곡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기준을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6. 소수의견: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